

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(안) 공고

진경여자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32조에 의거하여 「진경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」 개정(안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제안이유

- 가. 관련: 민주시민교육과-3395(2020.3.2.) 학교운영위원 선출관련 시행령 개정사항
나.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운영위원 선출 내용 추가

2.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(안)

현 행	개 정(안)
제10조(학부모위원회 선출) <p>①(선출 방법) 학부모위원회는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.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. ※ 학교사정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 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.</p>	제10조(학부모위원회 선출) <p>①(선출 방법) 학부모위원회는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.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, <u>전자적 방법</u>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. ※ 학교사정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 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.</p>

2021년 3월 31일

진경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

